

#### 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· 이행현황

-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21~'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. ('22. 2월)